

대구대학교-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
상호협력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확산, 산학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협력 분야)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1. 창조경제 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, 학술대회 공동 개최
2. 창업교육, 멘토링 및 컨설팅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보유 전문 인력 지원
3. 학생 창업지도, 아이디어 상품 기획 지원,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및 개최 지원
4.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지원,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
5. 교육 시설, 장비, 시스템 공유 및 정보자료의 상호 이용 및 협력
6. 기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한 사업 수행

제3조(세부사항)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업무협력 분야의 성과 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신의성실의 의무) 대구대학교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본 협약서 상의 조건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본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5조(협약서의 효력)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,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5년의 단위로 자동연장된다.

제6조(기타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쌍방 합의에 따른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 
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11. 2.

대구대학교  
총장 홍덕률



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
센터장 김선일

